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2026. 1. 28.(수) 10:00 / 배포 2026. 1. 28.(수) 08:30

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

- 가맹 사업 정보,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'창업-운영-종료' 단계별로 확인한다-

-가맹점 생존율·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**정보공개서 체계·내용 개편** 등의 내용을 담은 「**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(이하 '시행령') 개정안을 2026.1.28.부터 2026.3.9.까지 **입법예고**하고, 「**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**」*(이하 '표준양식 고시') 개정안을 2026.1.28.부터 2026.2.25.까지 **행정예고**한다.

*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, 기재 방법 등을 안내

※「표준양식 고시」는 행정규칙(고시)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(2026. 1. 28. ~ 2.25.)

이번에 **입법·행정예고**하는 **시행령 개정안**과 **표준양식 고시 개정안**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**정보 비대칭** 및 **힘의 불균형** 문제를 **시정**하고 **점주 경영 여건**을 **개선**하기 위하여 발표한 「**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**」의 **후속 조치**의 일환이자 **현 정부 국정과제**(64번)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. 본 개정안은 그간 **이해관계자·전문가**로 구성된 가맹 분야 **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**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.

※ 2025.9.23. 보도자료 "공정거래위원장,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" 참조

이번 **시행령**과 **표준양식 고시 개정안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1. 정보공개서 체계·내용 개편(시행령·표준양식 고시 개정)

①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

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**가맹점 생애주기 순(개설-운영-종료)**으로 **목차 체계**를 **개편**하고,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**핵심 정보***를 **간단히 요약**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·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* 가맹본부 일반 현황, 가맹사업 가맹점 안정성 지표(생존율 등), 개설 최초가맹금 내역, 운영 필수품목 현황 등

②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

정보공개서에 **가맹 창업 결정**에 **도움**이 되는 **중요한 항목**을 **추가**하고, **중복**되거나 **기재 실익**이 **낮은 항목**은 **삭제**하여 **정보공개서**의 **실효성**과 **가맹 희망자**의 **정보 접근성**을 높이고자 한다.

특히 **추가**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**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**나 **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** 등을 통하여 **가맹사업 안정성·폐업 위험**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. 또한, **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**나 **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** 등을 통하여 **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·가맹희망자(점주)**에 대한 **자금 지원 내역**을 확인할 수 있다.

한편, **창업 결정**에 **중요한 항목***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**변경 주기**를 **연 1회**에서 **분기 1회**로 **단축**한다.

* ▲가맹점·직영점 총 수, ▲가맹점·직영점 평균 영업기간, ▲장기 운영 가맹점 수(비율), ▲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, ▲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, ▲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

<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 >

시행령 [별표1] 개정	표준양식 고시 개정
❶ 사모펀드(PEF) 소유 가맹본부 정보	①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여부, ②펀드(운용사) 명칭, ③보유지분율, ④최대주주 지분 취득일
❷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	①가맹사업 영위 기간, ②최근 폐점 가맹점 수·평균 영업 기간, ③장기 운영 가맹점 수(비율), ④가맹점 생존율
❸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	①해외 진출 국가(지역), ②해외 점포 수, ③최초 진출 연도
❹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	①가맹점 개시 전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 결제 관련 정보, ②가맹점 개시 전(영업 중) 지급하는 기타 비용의 결제 관련 정보
❺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등 내역	①신용 내용, ②신용 제공자 정보(상호·금액·대부업 등록번호), ③당사 정보(대부중개업 등록번호, 신용 제공자와의 관계), ④신용 형태, ⑤대출 금리, ⑥신용 제공 조건, ⑦상환 조건(방식)
❻ 제휴 계약(배달앱, 모바일상품권 등) 세부내역	①제휴 계약의 성격, ②제휴업체의 명칭, ③거래(제휴) 조건
❼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	중도 해지시 평균 위약금 부담액(잔여 계약 기간별 구분)
❽ 기타 사항	①정보공개서 작성 기준일, 주사무소 소재지, 본점 주소 추가 ②직영점 영업 개시일 추가, ③중요 항목 분기별 기재로 변경

< 정보공개서 삭제 항목 >

시행령 [별표1] 개정	표준양식 고시 개정
❶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	▸ 가맹본부의 (피)인수·합병 내역(기업명, 영업표지 등)
❷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일부삭제	▸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의 이름, 직위, 사업 경력
❸ 가맹금 예치 절차	▸ 가맹금의 예치 절차와 방법
❹ 가맹점주 및 종업원 교육기준 일부삭제	▸ 가맹점사업자·종업원의 교육 기준
❺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등 판매제한	▸ 상품 판매가 제한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그 고객과 상품(용역)명, 제한 내용, 위반시 책임
❻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	▸ 영업지역 관련 특별한 영업방침
❼ 계약 수정 사유·동의 절차	▸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계약 수정시 절차 및 동의 절차 등의 정보
❽ 점주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, 판촉을 하려는 경우 조건·절차	▸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·판촉 활동에 대해 가맹본부가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, 그 내용 및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
❾ 직영점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	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

2.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서식·절차 등 정비(시행령 개정)

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**신규·변경 등록**시 **작성**해야 하는 **신청서 서식**을 **정비**하는 한편, 현재 **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**으로만 **운영**되고 있는 **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·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**한다. 아울러, 정보공개서 관련 **통지*** 방법에 **전자문서**를 추가할 예정이다.

* ▲등록 거부 통지, ▲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, ▲등록취소 통지 등

한편, **기타 제도 운영 과정**에서의 **미비점**을 **보완**하여 예상 매출액 산정시 근거가 되는 **인근 가맹점의 범위**에 **폐업한 가맹점**이 **포함됨을 명확히 한다.**

이번 개정을 통해 **가맹 희망자**가 **풍부한 정보**를 바탕으로 **창업 여부**를 더 **신중**하고 **합리적**으로 **결정**할 수 있게 되어 **창업 단계**에서 **점주-본부** 간 **정보 비대칭 완화** 및 **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, 정보공개서 **신규·변경 등록**이나 **자진 등록취소** 관련 **절차**와 **근거**를 **명확히** 하고 관련 **법령 서식**을 **체계적으로 정비**함으로써, 가맹 분야 **정보공개서 등록·관리** 단계에서의 **혼선**을 **최소화**하고 **행정 처리**의 **예측 가능성**을 **높일 수 있을 것**으로 보인다.

공정위는 입법·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,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**의견**을 **수렴**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**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** 및 **표준양식 고시 개정**을 **완료**할 계획이다.

[붙임 1]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[붙임 2]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
[붙임 3]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2 개정안
[붙임 4]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안
[붙임 5]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

※ 입법·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

▶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(http://www.ftc.go.kr→ 소식·뉴스 → 입법·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▶ **시행령 개정안**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**2026년 3월 9일**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①**예고사항에 대한 의견**(찬성 · 반대 · 수정 의견과 그 이유), ②**성명**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**주소**, **전화번호**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,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**표준양식 고시 개정안**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**2026년 2월 25일**까지 ①**예고사항에 대한 의견**(찬성 · 반대 · 수정 의견과 그 이유), ②**성명**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**주소**, **전화번호**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,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우편 : (30108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

* 팩스: 044-200-4978 * 전자우편: logjisu@korea.kr

담당 부서	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일 (044-200-499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수 (044-200-499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